

지역·지구등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(안)

「지역·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-2-4.(1)③, 6-3-3.(1)(2), 6-3-4.(1), 6-4-2.(4), 6-4-3중 “건설교통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해양부장관”으로 한다

5-2-3.(3)중의 “피검수자로로부터”를 “피검수자로부터”로 한다.

6-2-2.(3)중의 “고려하여 판단할 경우에”를 “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개정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-2-4. 지형도면등의 작성 대상</p> <p>(1) 생략</p> <p>① 생략</p> <p>② 생략</p> <p>③ 기타 <u>건설교통부장관</u>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</p>	<p>1-2-4. 지형도면등의 작성 대상</p> <p>(1)(현행과 같음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국토해양부장관</u>----- -----</p>
<p>5-2-3. 자료정비 방법</p> <p>(1) 생략</p> <p>(2) 생략</p> <p>(3)자료정비협의체는 <u>피검수자로</u>로부터 제공받은 도면으로부터 중복되어 존재할 수 없거나, 일치하여야 함에도 불일치하는 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,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정비한다.(이하 생략)</p> <p>(4) 생략</p> <p>(5) 생략</p>	<p>5-2-3. 자료정비 방법</p> <p>(1)(현행과 같음)</p> <p>(2)(현행과 같음)</p> <p>(3)----- <u>피검수자로</u>부터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(4)(현행과 같음)</p> <p>(5)(현행과 같음)</p>
<p>6-2-2. 지리정보목록의 작성</p> <p>(1) 생략</p> <p>(2) 생략</p> <p>(3)관리용지리정보목록은 관리기관의 장이 지리정보의 규모·특성·여건 등을 <u>고려하여</u> 판단할</p>	<p>6-2-2. 지리정보목록의 작성</p> <p>(1) 생략</p> <p>(2) 생략</p> <p>(3)----- ----- -----<u>고려하여</u> 필요하다</p>

경우에 작성할 수 있다.

(4) 생략

(5) 생략

6-3-3. 보안관리

(1) 생략

(2) 생략

(3)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제공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“자료제공대장”에 따라 기재하고 자료제공 요청관련 서류와 함께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(2) 제공된 지역·지구등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고일시, 사고내용, 조치 사항 및 결과 등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6-3-4. 보안각서 및 수령증 작성. 제출

(1) 지역·지구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자는 자료를 제공받기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“보안

고 판단할 경우에 -----.

(4) 생략

(5) 생략

6-3-3. 보안관리

(1) 생략

(2) 생략

(3) 국토해양부장관-----

-----.

(2)-----

-----국토해양부장관-----
-----.

6-3-4. 보안각서 및 수령증 작성. 제출

(1)-----

-----국토해양부장관-----

각서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(2) 생략

6-4-2.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

(1) 생략

(2) 생략

(3) 생략

(4)정보체계운영자는 지역·지구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손상된 경우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복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하며,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6-4-3. 수시점검

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체계운영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-----.

(2)(현행과 같음)

6-4-2.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

(1) 생략

(2) 생략

(3) 생략

(4)-----

-----국
토해양부장관-----

-----.

6-4-3. 수시점검

국토해양부장관-----

